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958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5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를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
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약이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u><신설></u> 1. ~ 9. (생략)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 ----- ----- ----- ----- ----- ----- ----- ----- ----- -----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9호

② · ③ (생략)	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¹⁾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은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골재채취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²⁾ 시·도지사는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골재채취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후 허가를
 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과
 비교하면 행정절차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를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원택
 의원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9)하려는
 것으로, 골재채취 단지에서와 동일하게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거치
 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골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비고
현행법(예정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양이용협의)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골재채취 허가 (해양이용영향평가) 「골재채취법」 제2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예정지 지정 시 협의 + 허가 시 영향평가 (2회 절차 진행)
현행법(단지)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양이용영향평가) 「골재채취법」 제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골재채취 허가 (영향평가 면제) 「골재채취법」 제2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단지 지정 시 평가 1회, 허가 시 영향평가 생략

개정안(예정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양이용영향평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신설)	골재채취 허가 (영향평가 면제) 「골재채취법」 제2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예정지 지정 시 영향평가 도입, 허가 시 영향평가 면제
개정안(단지)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양이용영향평가) 「골재채취법」 제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골재채취 허가 (영향평가 면제) 「골재채취법」 제2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기존과 동일

□ 다만, 개정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함.

- 첫째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으로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골재채취 단지와 골재채취 예정지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예정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이후 채취를 허가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허가하고, 단지는 국토부장관(EEZ 외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이후 채취를 허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국토부장관(EEZ 외는 시·도지사)이 허가함.

또한, 「골재채취법」 제34조에서 골재채취 단지 내 골재채취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 단지의 경우 주로 EEZ지역이나 어업활동을 하는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임.

따라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에도 단지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양이용협의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표] 예정지와 단지 비교

구 분	지정권자	지정 사유	채취 허가권자
예정지	시·도지사	연도별 수급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시·군·구청장
단 지	국토부장관(EEZ) 시·도지사(EEZ 外)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지정	국토부장관(EEZ) 시·도지사(EEZ 外)

- ☐ 동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각각의 행정절차 전에 협의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